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의무화 등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자산운용보고서 서식 개정 반영 등)
- 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서레 따른 세칙 정비 등)
- 라. 표준투자권유준칙 (고난도 금융상품 투자권유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 반영)
- 마.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(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관련 개정)
- 바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(휴면·장기미거래 금융재산 관리방안 마련)
- 사.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(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 확대)
- 아.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계약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(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예외 인정 사유 삭제)
- 자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(부동산·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방식 변경사항 반영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5/9/11 개정 · 2025/12/15 시행, 2025/9/17 개정 · 2025/9/19 시행)

1) 2025/9/11 개정 · 2025/12/15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의 ‘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’(2025.5.26.)을 마련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 -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, 국내 상품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
 - 개인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필요(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만 적용)

나) 주요 내용

-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의무화(제2-5조의3 제1항)
 - 해외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(1시간) 이수 의무를 부과
 - ‘외국인’, ‘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(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제외)에 따라 거래하는 자’는 제외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 · 모의거래 의무화(제2-5조의3 제3항, 제4항, 제6항)

-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(1시간 이상) 및 모의거래(3시간 이상) 이수 의무를 부과
 - 국내 및 해외 통합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,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 · 모의거래 시간을 차등 적용 가능

□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면제

구분		면제요건	개정
해외 버리지 ETP	사전교육	기존 국내 및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	부칙 제2조 제1항
		기존 국내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이수자	
해외 파생상품	사전교육	기존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	부칙 제2조 제2항
		기존 국내 파생상품 사전교육 이수자	부칙 제2조 제3항
		CFA, FRM 등 파생상품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자	제2-5조의3 제5항
		투자일임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자	제2-5조의3 제3항
	모의거래	기존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	부칙 제2조 제2항
		기존 국내 파생상품 모의거래 이수자	부칙 제2조 제3항
		CFA, FRM 등 파생상품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자로서 파생상품 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	제2-5조의3 제3항
		투자일임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자	제2-5조의3 제3항

2) 2025/9/17 개정 · 2025/9/19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펀드자산의 주기적 공정가치 평가 및 대체자산의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되고, 금투업규정은 외부평가가 곤란하여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(제7-36조의2 제4항)함에 따라, 이를 반영하기 위함
 - (주기적 공정가치 평가)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펀드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치를 평가하여야 함(영 제 260조 제2항)
 - (대체자산 외부평가) i) 공모부동산 · 특자펀드, ii) 자산의 50% 이상이 부동산 · 특별자산인 사모펀드 자산의 외부평가 의무화(금투업규정 제7-36조의2 제3항)

나) 주요 내용

- 외부평가의 예외를 적용받는 펀드 또는 자산 사례를 열거(제8-16조 신설)
 -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
 - 직전에 평가한 순자산총액이 설정원본의 100분의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
 - 해지되거나 해산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
 -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-7조 제1항 제1호의 대출채권인 경우
 - 투자대상자산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인 경우
 - 투자대상자산이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한 자산인 경우
 - 투자대상자산이 개발·제조·제작중인 자산 또는 자산을 개발·제조·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투자 자산(지분이 아닌 자산은 제외)인 경우
 - 투자대상자산의 매도가격이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이후이거나, 영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가격정보가 매도에 불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
 - 영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가격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이 공정가액의 1만분의 5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
 - 직전에 평가한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투자대상자산의 경우
 -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7-35조 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8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2025/9/26 개정·시행, 2025/9/30 개정·2025/12/15 시행)

1) 2025/9/26 개정·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금감원이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, 외부 평가관련 사유 및 이를 대체할 평가방법 등을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 -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대체자산(부동산, 특별자산)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시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되,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(영업및업무규정 제8-16조 각 호)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, 대체평가방법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(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의2 제3·4항)
 -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<제20호>를 개정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개정(2025.9.18. 개정·2025.9.19. 시행)

나) 주요 내용

- 금감원 개정 서식을 반영하여, 외부평가 곤란 사유 및 대체평가방법, 향후 평가계획, 법령상 외부 전문기관 외의 자와 체결한 평가계약의 타당성 등에 대한 기재양식 신설
 - 특정 자산(ex. 선박, 항공기, 미술품, IP 등)에 대하여 법령상의 외부 전문기관 이상의 전문성과 평판을 갖추었는지 여부, 용역대가 등 계약조건의 공정 여부 등

2) 2025/9/30 개정 · 2025/12/15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금감원의 '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'(2025.5.26)에 따라,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개정(2025.9.11.)되어 세칙에 위임한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에 대한 상세 요건을 정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에 사용되는 모의거래 시스템의 구축 요건을 신설(별지 제70호)

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5/9/1 개정 · 2026/1/2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에 따른 세칙을 정비하고,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투자자 보호대책을 명확히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폐지지정기업부(가칭) 신설에 따른 세칙 정비(제5조, 제7조 제2항)
 -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내용에 추가
 -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 등의 매매개시일 기준가격 산정기준 마련
 - 상장폐지 후부터 K-OTC 진입 전까지 기준가격 변경 사유(감자 등)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

2) 별표 2의 '(주)2. 주당순자산가치 산정 방법' 개정세칙은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

[매매개시일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호가접수범위]

구분		매매개시일	
		기준가격 산정기준	호가접수범위
1	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	MIN(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증가,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증가 산술평균)	미적용 (±30% 가격제한폭 적용)
2	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	MIN(지정해제일 전 최종 거래형성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, 최종 3거래형성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술평균)	
3	그 외 종목 (기준과 동일)	주당순자산가치	기준가격의 30~500%

□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투자자 보호대책 명확화(제3조 제3항 신설)

-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소액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자자 보호대책을 구체화
 - 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
 - 등록해제 신청일 당일 최대주주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(자기주식은 제외)의 100분의 75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
 - 등록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
 -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거래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
-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(별표 4)

□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정비(별표 4)

- 규정 개정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마련

□ 주당순자산가치를 적용하는 신규등록 · 지정기업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개선(별표 2)

- 신규 등록 · 지정기업의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의 증감액 반영시
 - 기준가격이 되는 주당 순자산가치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 개선

라. 표준투자권유준칙 (2025/9/11 개정 · 시행)³⁾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는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공표하고, 후속조치를 위한 금소법시행령 ·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(7.15)함에 따라 동 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
 - 금융위원회, ‘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‘적합한’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.(2025.2.26.)’

2) 주요 내용

-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한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(회사참고사항 8-1, [참고1] (예시1), (예시2) 및 [참고4])
 - 투자권유시 마다 해당 시점의 투자목적, 투자예정기간 등 ‘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’를 파악, 투자자의 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함
 - 필수확인 정보 : 거래목적, 재산상황, 투자성상품 취득·처분 경험, 상품 이해도, 위험에 대한 태도, 연령
- 고난도 금투상품 투자권유 시 점수화(Scoring) 방식과 추출(Factor-out)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(회사참고사항 10-1)
 - 점수 방식 : 항목별 투자자 답변을 점수화하고, 점수 총합에 따라 투자성향 매칭
 - 추출 방식 : 항목별 투자자 답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대상에서 제외
- 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 중 ‘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’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([참고1] (예시1), (예시2))
 - 원금 보존 필요, 10% 손실 가능, 20% 손실 가능, 50% 손실 가능, 70% 손실 가능, 전액 손실 가능’ 등으로 세분
- 고난도 금투상품은 사전에 정한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에 한하여 판매(준칙 13. 5), 6) 및 회사참고사항 13-3 신설)
 - 다만,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의사가 있는 경우, (부)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, 투자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징구
 - ‘손실감내수준’과 ‘투자목적’을 고려한 투자기간’ 항목 필히 확인

3) 규정변경예고(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-528호)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개정(안) 시행일 적용, 다만, 회사참고사항 14-1 개정사항은 규정변경예고(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-535호)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개정(안) 시행일 적용

- 고난도 금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의 녹취시점 ‘설명 의무 이행시’에서 적합성 평가(투자자정보 확인시)로 확대(회사참고사항 10-6 등 신설)
 - 다만, 투자자가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, 적합성 평가결과 안내시부터 녹취 가능
- 설명의무 강화(회사참고사항 14-2, 준칙 14. 1), [참고5])
 - 투자자가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설명의무 확인 및 주요내용 확인서 상에 행동편향 유의 문구 추가
 - 투자상품 설명의무 이행시 전문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반영
 - 고령 투자자가 고난도 금투자상품 계약 체결시, 숙려기간 중에 가족 등과 상품의 내용, 계약의 필요성을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인 확인 서비스 도입
 - 고령투자자가 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
- 고난도 금투자상품 투자자 이해도 제고방안(준칙 14. 11) 신설, 회사참고사항 14-2)
 - 투자자가 고난도 금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의 위험성, 역대 손실 사례, 상품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숙려기간 중 제공하고, 청구설명시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
 - 고객에게 제공되는 설명서의 상품명 앞에 ‘고난도 금투자상품’ 문구를 추가하여 눈에 띄 수 있도록 표시
 -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사이즈, 색, 폰트 등을 활용하여 ‘고난도금투자상품’을 표시
 - 설명서 상단에 고난도 금투자상품 부적합 투자자, 손실발생가능성 및 손실사례 등을 우선 배치
- 신규 부당권유 행위 유형 등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(준칙 13. 1) 파. 하. 신설, 회사참고사항 14-1)
 - 적합성·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및 대면 투자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투자권유시 유의사항에 포함
 - 발행어음 및 IMA(종합투자계좌)가 금소법령상 투자성상품으로 규정되어 투자성상품으로서의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적용이 명확화
 -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금지, 허위·과장광고 금지
 - 이에 따라,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발행어음 설명의무 기준 삭제

마.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(2025/9/11 개정·시행)⁴⁾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4) 규정변경예고(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-528호)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개정(안) 시행일 적용

- 금융위원회, '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'적합한'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.(2025.2.26.)'

2) 주요 내용

- (고난도금융상품 목표시장 부합고객 판매)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사전에 정한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에게 판매 명확화(회사참고사항 17-2)
 - 다만,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의사가 있는 경우
 - (부)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,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 가능

바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5/9/11 개정 · 2025/9/1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 요청 등으로 금융회사의 휴면 · 장기미거래 금융재산(이하 '휴면재산') 관리방안 반영 등을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휴면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(제22저 제3항 및 제4항)
 - 금융상품 만기 시 안내방법, 만기 이후 안내방법, 동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운영 등 휴면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위한 일반 원칙 제시

사.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(2025/9/15 개정 · 2025/9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개정을 통해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함
 - 금융투자업규정 제5-18조(매매대상 증권) 개정(2025.6.2.)

2) 주요 내용

-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 확대(제3조 제1항, 제2항)
 - 대고객환매조건부거래의 매매대상 증권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,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사채권 편입 허용

- 매매대상 증권이 갖추어야 할 세부요건 추가
 - 매매대상 증권의 변경 시 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

아.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(2025/9/1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2025년 9월 19일부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하여 예외 없이 최소 연 1회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, 이를 반영 하기 위함
 - 기존 자본시장법령은 펀드재산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액 평가의무를 부과하나, 평가주기는 정하지 않음(시행령 제260조 제2항)
 - 이에 따라,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주기를 최소 연 1회로 정하되,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기적 평가 면제(필요시 수시 평가)

2) 주요 내용

- 주기적 평가의 예외 인정 사유를 삭제(1.4, 3.1)
 -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모든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함

자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(2025/9/1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부동산 · 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방식 변경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위함
 - 자산운용사(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)는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공정가치를 평가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2025.3.18. 개정, 시행 : 2025.9.19.)
 -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부동산 · 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시에는, 외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(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의2 제3항 신설, 시행 : 2025.9.19)

2) 주요 내용

- (기존) 부동산 실물과 부도안 외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함

- (부동산 실물)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취득가격으로, 1년 경과시에는 매 1년마다 감평법인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(IV-21. 부동산의 평가)
 - 시장가치,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 발생시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평법인 제공 가격 등 고려하여 평가 가능
- (실물자산)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(IV-22. 부동산의 평가)

□ (개정) 부동산의 평가(IV-21)와 실물자산의 평가(IV-22)를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평가(IV-21)로 통합

- (해당자산)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모든 부동산 및 특별자산(시가평가자산은 시가로 평가)
 - 부동산 실물 등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, 부동산/특별자산에 해당하는 증권, 대출채권, 파생상품, 무체재산권(리 등) 포함
- (평가방법) 공정가액(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가격)을정함에 있어, 최근 1년 내 외부평가가격(가격 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한 가격)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
 - (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공정가액 평가시 고려사항) 자산 취득가격, 거래가격, 외부평가가격, 환율, 펀드 기준가격
-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준수하도록하면서, 자발적으로 받은 외부평가 가격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, 외부평가를 받은 사례에서 평가의 객관성/일관성 도모
- 외부평가가격이 없는 경우, 자산취득가격, 거래가격, 환율, 펀드 기준가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